

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16. 10. .
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으로 완화된 규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민원이 반복되는 조항을 수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 중 난개발 및 환경파괴가 동반될 가능성이 큰 입목축적 완화방안은 현행안으로 환원하여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22조제1항제1호 후단 중 “100퍼센트”를 “75퍼센트”로 한다.
- 제30조제4호를 현행과 같이 한다.

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2조제1항제1호 후단 중 “100퍼센트”를 “75퍼센트”로 한다.

제30조제4호를 현행과 같이 한다.

수정안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3조(도시기본계획의 위상) <u>법 제22조의</u> 규정에 <u>의하여</u>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시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<u>시장이</u>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.	제3조(도시기본계획의 위상) <u>법 제22조의2- ----- 따라서 -----</u> ----- ----- ----- <u>구미</u> <u>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--.	제3조(도시기본계획의 위상) (개정안과 같음)
제4조(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) ① ~ ③ (생략) ④ 제2항에 <u>의한</u>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<u>시 도시 계획위원회</u> 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.	제4조(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</u> <u>도시계획위원회</u> ----- ----- --.	제4조(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(개정안과 같음)
제5조(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) ① <u>구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</u> 은 도시	제5조(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) ① <u>시장</u> ----- -----	제5조(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) ① (개정안과 같음)

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,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개최 예정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

④ ~ ⑧ (생략)

제7조 (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처리절차 등)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

----- 청취
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④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7조 (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처리절차 등) ① -----
----- 따라서 -----

----- 각 호 -----

--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④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7조 (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처리절차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

1. ~ 10. (생 략) ②·③ (생 략) 제9조(재공고·열람사항) <u>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공고한 내용중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내용이 타당하여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함으로써 입안내용이 현저히 변경되어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다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다시 공고·공람하게 할 수 있다.</u> <u><신 설></u> 제10조(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) ① <u>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의 구체적인</u>	1. ~ 10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9조(재공고·열람사항) ① <u>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·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u> ② <u>제1항에 따른 재공고·열람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.</u> <u><삭 제></u>	1. ~ 10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9조(재공고·열람사항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 <u><삭 제></u>
---	---	--

시행을 위하여 영 제
22조제2항에 의한 공
람공고를 한 경우에
는 도지사의 승인을
얻어 「건축법」 제1
8조에 의하여 건축허
가의 제한을 할 수 있
다

② 제1항의 의하여
건축허가를 제한하는
경우에는 허가제한
공고일로부터 6월이
내에 시도시계획위원
회의 심의 또는 자문
을 받아 도시관리계
획의 결정 또는 요청
을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
의한 결정 또는 결정
요청을 절차상 할 수
없는 경우에는 도시
계획위원회의 자문을
받아 건축허가의 제
한을 「건축법」의
규정에 의한 제한기
간동안 계속할지의
여부를 결정하여 도
지사의 승인을 받아

야 한다.

제11조(지구단위계획중
경미한 변경사항) 영
제25조제4항 후단의
규정에 의하여 지구
단위계획중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경미한 사항
을 변경하는 경우에
는 관계 행정기관의
장과의 협의, 국토교
통부장관과의 협의,
도시계획위원회의 심
의 및 건축위원회와
도시계획위원회의 공
동심의를 생략할 수
있다.

1. 지구단위계획으로
결정한 도시계획시
설에 대한 변경으로
서 영 제25조제3항
제1호 내지 제3호에
해당하는 변경

2. 가구(영 제42조의
2제2항제4호에 따
른 별도의 구역을
포함한다)면적의 1
0분의 1 이내의 변

[illegible]

<삭 제>

<삭 제>

제11조(지구단위계획중
경미한 변경사항)
(개정안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<u>경</u>		
3. <u>획지면적의 10분의 3 이내의 변경</u>	<u><삭 제></u>	<u><삭 제></u>
4. <u>건축물높이의 10분의 2 이내의 변경</u>	<u><삭 제></u>	<u><삭 제></u>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	5. (현행과 같음)
6. <u>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</u>	<u><삭 제></u>	<u><삭 제></u>
7. <u>건축선 1m이내의 변경인 경우</u>	<u><삭 제></u>	<u><삭 제></u>
8. <u>건축물의 배치 ·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</u>	<u><삭 제></u>	<u><삭 제></u>
9. <u>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. 다만, 용도지역 · 용도지구 · 도시계획시설 · 가구면적 · 획지면적 · 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.</u>	<u><삭 제></u>	<u><삭 제></u>
10. <u>규칙 제3조제2항</u>	<u><삭 제></u>	<u><삭 제></u>

제17조(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) <신설>

제17조(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) ①
영 제43조제2항제2호
에 따른 유사시설은
주차장, 자동차정류
장, 자동차·건설기
계운전학원, 유통업
무설비, 전기·가
스·열공급설비, 방
송·통신시설, 문화
시설, 청소년수련시
설, 체육시설, 공공
직업훈련원, 사회복
지시설, 종합의료시

제17조(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) ①
(개정안과 같음)

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~ 8. (생략)

<신설>

설,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.

②-----
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의2(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)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「국토교통부령」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(이하 이 항에서 “반환금”이라 한다)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

② (개정안과 같음)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의2(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) (개정안과 같음)

<신 설>

당 건축물에 대한 건
폐율, 용적률 및 높
이제한을 완화할 수
있으며, 반환금은 기
반시설의 확보에 사
용하여야 한다. 단,
반환금은 소유권이전
을 완료한 날로부터
3년 이내에 전액 반
환한 경우에 적용한
다.

제21조의2(성장관리방
안 대상지역 등) ①
영 제56조의2제1항제
4호에 따라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지역은 성장
관리방안을 수립할
수 있다.

1. 산업단지, 택지개
발지구 등 대규모
개발사업지와 인접
한 지역

2. 그 밖에 수립권자
가 무질서한 개발방
지를 위하여 성장관
리방안 수립이 필요
하다고 인정하는 지

제21조의2(성장관리방
안 대상지역 등) (개
정안과 같음)

	<u>역</u> ② 영 제56조의2제2 항제5호에 따라 성장 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. 1. <u>교통처리계획</u> 2. <u>주민편의시설계획</u> ③ 영 56조의3제5항 제5호에 따라 “그 밖의 도시·군계획조 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. 1. <u>면적 산정의 착오</u> <u>를 정정하기 위하여</u> <u>변경하는 경우</u> 2. <u>성장관리방안의</u> <u>주요내용이 아닌 사</u> <u>항으로 그 성장관리</u> <u>방안에서 경미한 사</u> <u>항으로 결정된 사항</u>	
제22조(개발행위허가의 기준) ① 영 별표 1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 하여 시장은 다음 각	제22조(개발행위허가의 기준) ① ----- ----- 따 라서 -----	제22조(개발행위허가의 기준) ① (개정안과 같음)

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	----- ----- ----- --	
1.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. 단 녹지지역일 경우 우리시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<u>75퍼센트</u> 미만일 것.	1.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 ---- <u>100퍼센트</u> ---- -----.	1.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 ---- <u>75퍼센트</u> ---- -----.
2. <u>경사도가 45퍼센트 미만인 토지.</u>	2. <u>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가 45퍼센트 미만인 토지</u>	2. (개정안과 같음)
3. · 4. (생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현행과 같음)
제30조(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)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	제30조(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	제30조(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) (현행과 같음)

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~ 3. (생략) 4. <u>입목축적은 구미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75퍼센트 이상인 토지 및 경사도 45퍼센트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(단,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</u> 제33조(용도지역·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영 제71조,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·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<u>각호</u>와 같다. 1. ~ 22.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의 입목축적이 ----- 100퍼센트 이상인 토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가 -----</u> ----- 제33조(용도지역·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----- ----- ----- --- <u>따라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. 1. ~ 22. (현행과 같음)	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제33조(용도지역·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(개정안과 같음)
--	---	--

[illegible]

	<u>허용되는 건축물 외</u> <u>에 해당지구계획(해</u> <u>당 지구의 토지이용,</u> <u>기반시설 설치 및 환</u> <u>경오염 방지 등에 관</u> <u>한 계획을 말한다.)</u> <u>에 따라 영 제79조제</u> <u>3항 각 호의 구분에</u> <u>따른 요건을 갖춘 건</u> <u>축물을 건축할 수 있</u> <u>다.</u>	
제58조의3(기존의 건축 물에 대한 특례)	제58조의3(기존의 건축 물에 대한 특례)	제58조의3(기존의 건축 물에 대한 특례)
① 영 제93조제2항 단 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 도의 범위에서 업종 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기존 업종보다 오 염배출 수준이 같거 나 낮은 경우에만 변 경 할 수 있다.	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이 공장이나 제조업 소인 경우에는 대기 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 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.	② (개정안과 같음)
② 영 제9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 이 아닌 증설 시설이 영 별표19 제2호 자 목 (1)부터 (4)까지	① 영 제93조제4항--- ----- ---- 시설의 증설은 ----- -----	① (개정안과 같음)

어느 하나에 해당하
지 아니한 경우에만
가능하다.

제59조의2(건폐율 특
례) 제59조에 불구하
고 영 제84조 또는 제
84조의2에 따라 적용
하는 건폐율은 다음
과 같다.

1. (생 략)

<신 설>

2. 영 제84조제5항제
4호에 따라 계획관
리지역의 기존공
장·창고시설 또는

-----.

제59조의2(건폐율 특
례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영 제84조제6항제
2호의 규정에 따라
녹지지역·관리지
역·농림지역·자
연환경보전지역의
건축물로서 법 37조
제4항 후단에 따른
방재지구의 재해저
감대책에 부합하게
재해예방시설을 설
치하는 건축물의 경
우에는 해당 용도지
역 건폐율의 150%
이하로 한다.

3. 영 제84조제6항제
4호-----

제59조의2(건폐율 특
례) (현행과 같음)

1. (현행과 같음)

2. (개정안과 같음)

3. (개정안과 같음)

연구소 (2003년 1월
1일 전에 준공되고
기존부지에 증축하
는 경우로서 도시계
획위원회의 심의를
거쳐 도로·상수
도·하수도 등 기반
시설이 충분히 확보
되었다고 인정되는
경우만 해당한다) :
50퍼센트 이하

3. 영 제84조제8항에
따라 자연녹지지역
에 설치되는 도시계
획시설 중 다음의
시설

가.·나. (생 략)

4. 영 제84조제5항제
5호에 따라 녹지
지역·보전관리지역
·생산관리지역·
농림지역 또는 자연
환경보전지역의 기
존 건축물로서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건축물
: 30퍼센트 이하

7. 영 제84조제9항--

가.·나. (현행과
같음)

4. 영 제84조제6항제
5호-----

7. (개정안과 같음)

가.·나. (현행과
같음)

4. (개정안과 같음)

가. ~ 다. (생략)

<신설>

5.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 : 60퍼센트 이하

가.·나. (생략)

<신설>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5.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)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: 30퍼센트 이하

6. 영 제84조제8항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5. (개정안과 같음)

6. (개정안과 같음)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(개정안과 같음)

	<u>산지유통시설</u> (<u>시 관할구역에</u> <u>서 생산된 농산</u> <u>물판매를 위한</u> <u>산지유통시설만</u> <u>해당한다</u>)	
<u>6. (생 략)</u> <u><신 설></u>	<u>8. (현행 제6호와 같</u> <u>음)</u> <u>제59조의3(성장관리방</u> <u>안 수립지역에서의</u> <u>건폐율 완화 기준)</u> <u>법 제77조제5항에 따</u> <u>라 영 제84조의3제2</u> <u>항에 적합한 경우 영</u> <u>제84조의3제2항 각</u> <u>호의 건폐율을 따른</u> <u>다.</u>	<u>8. (현행 제6호와 같</u> <u>음)</u> <u>제59조의3(성장관리방</u> <u>안 수립지역에서의</u> <u>건폐율 완화 기준)</u> <u>(개정안과 같음)</u>
제60조(기타 용도지 구·구역 등의 건폐 율) <u>영 제84조제3항의</u> <u>규정에 의하여 다음</u> <u>각호1에 해당하는 용</u> <u>도지구·용도구역 등</u> <u>의 건폐율은 다음 각</u> <u>호와 같다.</u> 1. <u>취락지구 : 60퍼</u> <u>센트 이하</u>	제60조(기타 용도지 구·구역 등의 건폐 율) <u>영 제84조제4항</u> <u>의 규정에 따라서 다</u> <u>음 각 호의 어느 하나</u> <u>-----</u> <u>----- 각 호</u> <u>와 ----.</u> 1. ----- <u>이하(집단취락지구</u> <u>에 대하여는 개발제</u>	제60조(기타 용도지 구·구역 등의 건폐 율) (개정안과 같음) 1. (개정안과 같음)

	<u>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 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)</u>	
2. <u>도시지역외의 지 역에 지정된 개발진 흥지구 : 40퍼센트 이하</u>	2. <u>개발진흥지구 : 다음 각 목에서 정 하는 비율 이하</u> 가. <u>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: 40퍼센트</u> 나. <u>자연녹지지역 에 지정된 경우: 30퍼센트</u>	2. (개정안과 같음)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	3. (현행과 같음)
4. 「 <u>자연공원법</u> 」에 <u>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: 40 퍼센트 이하</u>	4. 「 <u>자연공원법</u> 」에 <u>따른 자연공원 : 6 0퍼센트 이하</u>	4. (개정안과 같음)
5. · 6. (생 략)	5. · 6. (현행과 같 음)	5. · 6. (현행과 같 음)
제61조(건폐율의 강화) <u>영 제84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도시지 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 추어야 할 필요가 있 는 경우 당해 구역에</u>	제61조(건폐율의 강화) <u>영 제84조제5항----- --- 따라서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u>	제61조(건폐율의 강화) (개정안과 같음)

적용할 건폐율의 최
대한도의 40퍼센트까
지 건폐율을 낮출 수
있다.

제62조(방화지구안에서
의 건폐율의 완화)
영 제84조제5항의 규
정에 의하여 준주거
지역· 일반상업지
역· 근린상업지역의
방화지구안에 있는
건축물로서 동항 각
호의 1에 해당하는
건축물의 건폐율은 8
0퍼센트 이하로 한
다.

제64조(용도지역안에서
의 용적률) ① 영 제8
5조제1항의 규정에
의하여 각 용도지역
의 용적률은 다음 각
호와 같다.

1. ~ 18. (생 략)

19. 계획관리지역 :
100퍼센트 이하

----- 낮출 -
-----.

제62조(방화지구안에서
의 건폐율의 완화)
영 제84조제6항제1호
---- 따라서 -----

----- 주요 구
조부와 외벽이 내화
구조인 -----

--.

제64조(용도지역안에서
의 용적률) ① -----
----- 따
라서 -----
----- 각 호-----
--.

1. ~ 18. (현행과 같
음)

19. 계획관리지역 :
100퍼센트 이하(다
만, 법 제78조제1항
제2호다목에 따라

제62조(방화지구안에서
의 건폐율의 완화)
(개정안과 같음)

제64조(용도지역안에서
의 용적률) (개정안
과 같음)

1. ~ 18. (현행과 같
음)

19. (개정안과 같음)

20. · 21. (생 략)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· 관리지역 ·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 ③ ~ ⑤ (생 략) <신 설>	<u>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)</u> 20. · 21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,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: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	20. · 21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(개정안과 같음)
--	--	---

제65조(기타 용도지구·구역 등의 용적률)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·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·2. (생략) 3. 「자연공원법」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: 80퍼센트 이하(다만, 「자연공원법」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) 4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: 150퍼센트 이하 제69조(구성) ① 위원	<u>적률의 120퍼센트 이하</u> 제65조(기타 용도지구·구역 등의 용적률) 영 제85조제6항----- 따라 다음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<u>각 호</u>와 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자연공원 : 100퍼센트 이하 4. ----- ----- ----- <u>따른 농공단지(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)</u> ---- 제69조(구성) ① -----	제65조(기타 용도지구·구역 등의 용적률) (개정안과 같음)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(개정안과 같음) 4. (개정안과 같음) 제69조(구성) ① (개정
--	---	--

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(생략)

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,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

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, 구미시 타 위원회와 중복 위촉은 3개 위원회 이하로 하고, 제1호와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.

-----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위원장으로 한다.

④ -----
-- 각 호의 어느 -----

-----.

-----.

안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(개정안과 같음)

④ (개정안과 같음)

1. <u>시 의회 의원3인</u>	1. <u>구미시의회의의원 3</u> <u>명</u>	1. (개정안과 같음)
2. · 3. (생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	⑤ (현행과 같음)
제72조(분과위원회) 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영 제113 조 <u>각호의</u> 사항을 심 의 또는 자문하기 위 하여 위원회에 다음 <u>각호와</u> 같이 분과위 원회를 둔다.	제72조(분과위원회)① ----- ----- --- <u>각 호의</u> ----- ----- ----- <u>각 호와</u> ----- -----.	제72조(분과위원회)① (개정안과 같음)
1. 제1분과위원회 : 법 제9조에 따른 용 도지역 등의 변경계 획, 법 제50조에 따 른 지구단위계획구 역 및 지구단위계획 의 결정 변경에 관 한 사항,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<u>관한</u> <u>사항</u>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관한 사항,</u> <u>법 제120조의 규정</u> <u>에 따른 이의신청에</u> <u>관한 사항</u>	1. (개정안과 같음)
2. · 3. (생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② 분과위원회는 위	② -----	② (개정안과 같음)

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<u>11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</u>으로 구성 하며, 위원회의 위원은 <u>2 이상</u>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. ③ ~ ⑤ (생략) 제74조(자료제출 및 설명요청) ① (생략)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<u>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</u> 이에 응하여야 한다. 제78조(설치 및 기능) ① ~ ③ (생략) ④ 단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하여 <u>10이</u> 이내로 구성하며 연구위원은 도시계획관련 전문가로 한다. ⑤ (생략) 제81조(자료·설명요청) ① (생략)	----- ----- <u>11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</u>으로 구성하며----- ----- <u>두개</u> ----- -----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74조(자료제출 및 설명요청) ①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제78조(설치 및 기능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<u>10명</u> ----- -----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 제81조(자료·설명요청) ① (현행과 같음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74조(자료제출 및 설명요청) ①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제78조(설치 및 기능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(개정안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 제81조(자료·설명요청) ① (현행과 같음)
--	--	---

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. 제82조(허가를 받지 아 니한 개발행위에 대 한 조치) ① 읍· 면·동장은 법 제56 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 행위를 한 자에 대하 여 법 제6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원상회 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시장에 게 다음 각호의 서류 를 붙여 고발요청을 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 ② (생략) 제84조(과태료의 부과)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	음) <삭 제> 제82조(허가를 받지 아 니한 개발행위에 대 한 조치) ① 읍·면 장----- ----- 따 른 ----- ----- ----- ----- 따른 ----- ----- ----- 각 호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 음) ② (현행과 같음) <삭 제>	음) <삭 제> 제82조(허가를 받지 아 니한 개발행위에 대 한 조치) ① (개정안 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 음) ②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---	---	--

의 징수절차는 「구
미시세부과징수규
칙」을 준용한다. 이
경우 납입고지서에는
이의방법 및 이의기
간등을 기재하여야
한다.